

운영규정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8인
2.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

<입소자격>

시설의 입소 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입소절차 등>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를 진행하며, 무의탁 노인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용인시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퇴소희망자는 10일 이전에 시설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2. 시설입소자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한다.
3. 시설입소자의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
4. 위 내용 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시설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숙지 및 동의 후 시설에 협조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및 방문하여 직접계약을 실시한다.

<서비스내용 및 비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단,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특별한 보호 서비스기준 및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시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배상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갈음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퇴소 등>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

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3.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퇴소 후 관리>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전원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각 분야별 2명 초과 금지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시설의 장
 - ② 시설거주자 대표
 - ③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 ⑤ 사회복지 공무원
 -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⑦ 공익단체 추천인
 - ⑧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 반기별 1회이상개최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설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